

경상북도 • (재)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

2022년 '경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'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(재)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영세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「경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」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,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2년 6월 2일

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원장

1. 사 업 명 : 2022년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

2. 지 원 명 :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

3. 추진목적

- 경북지역 영세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개발 또는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
- 수요처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디자인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
- 신생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 발굴 및 공급망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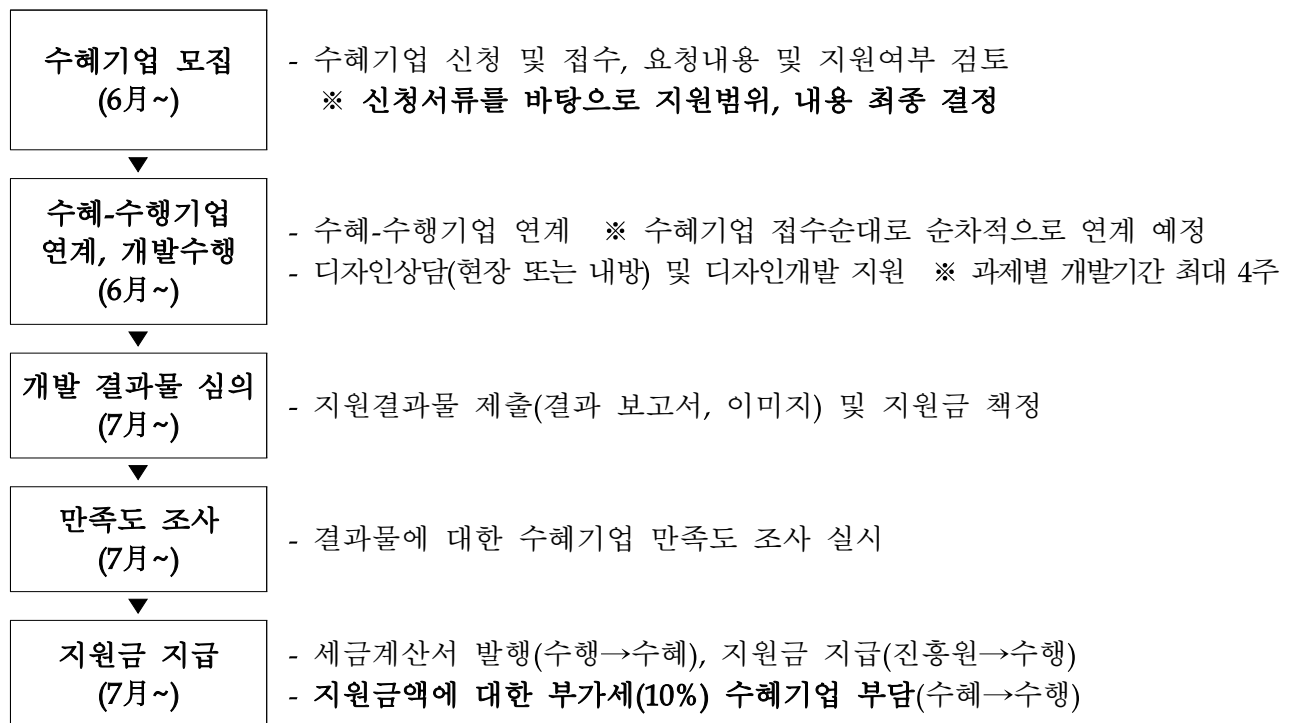
4. 지원기간 : 2022년 6월 ~ 12월 (사업비 소진 시 자동 종료)

5. 지원내용

구 분	수혜기업(디자인 요청기업)	
지원대상	· 경북지역 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창업초기기업·중소기업 (사업자등록증 본점 기준)	
자격요건	·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사업자 · <u>전년도('21)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</u> 에 한해 지원	
지원내용	· 기업별 디자인애로 상담 및 디자인시안 지원 ※ 지원분야 참고	
지원분야 (선택)	시각디자인	· 로 고 : 기존 네이밍 활용한 로고시안 ※ 네이밍 개발불가 · 홍보물 : 전단지, 리플렛, 스티커, 초청장, 광고포스터, SNS 홍보물 제작 등 · 사인물 : 입간판, 현판, 현수막, 안내표지판, 배너, 픽토그램 등 ※ 인쇄 前단계의 시각디자인 개발 (디자인시안)

	포장디자인	· 제품 포장 및 지기구조 등 단일패키지 · 쇼핑백, 포장지, 용기라벨, 네임텍, 포장용 스티커, 속박스 등 ※ 인쇄 前단계의 포장디자인 개발
	웹·GUI	· 홈페이지 및 앱에 대한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등 ※ 코딩 지원 제외(프로그래밍,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만 지원 가능)
신청방법	· 수혜기업 단독 신청(온라인) 후 과제 내용에 따라 적합기업 관리기관 매칭	
지원비율	· 기업 당 1개 과제 무상 지원 ※ 지원금액에 대한 VAT 별도 (지원금액 최대 2,000천원)	
모집기간	· 2022년 6월 2일(목) ~ 수시 접수·신청 (단, 사업비 소진 시 자동마감)	

6. 추진절차



※ 사업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7. 선정방법

- 담당자 이메일(jsa@dgdg.or.kr)을 통한 제출서류 선착순 접수 기준
- 지원대상 기업 여부 파악 등을 심사하여 지원결정
- 제출서류 미제출, 허위 증빙 첨부,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예외 없이 선정 취소
하고 다음 순번 기업에게 기회 부여

8.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

구 분	수혜기업
제출서류	- 지원신청서 - 사전지원제외 협약서 - 사업자등록증 - 전년도('21) 매출증빙 자료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) ※ 필요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관련 추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
접수방법	- 온라인(E-mail) 접수 *제출처 : jsa@dgdg.or.kr 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 제출

9. 지원 제외대상

9-1.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- 수혜기업, 수혜기업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, 수혜기업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)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

9-2.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신청과제의 개발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수혜기업, 수혜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10. 유의사항

- 수혜기업은 본 사업으로 당해연도 1개 과제 수혜 가능함
-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액의 10%로 하고, 수혜기업 부담으로 함

11. 관련 문의처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e-mail
사업본부 기업지원팀	정선애 전임	053-740-0037	jsa@dgdpo.or.kr

12. 사업신청 및 제출관련 양식 다운로드

- 본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 참조